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82 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조인철・안도걸・황정아

주철현 • 박민규 • 위성곤

김윤덕 · 강준현 · 이병진

이광희 • 박희승 • 오세희

백승아 · 최민희 · 이재강

고민정 • 박수현 • 서영교

채현일 · 문대림 · 박해철

임호선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 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 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

년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·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1년 이내"를 "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"로 한다. 제19조의2제4항 본문 중 "1년 이내"를 "3년 이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(육아휴직) ① (생 략)	제19조(육아휴직) ① (현행과 같		
	승)		
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<u>1년 이</u>	② <u>자녀 1</u>		
<u>내</u> 로 한다.	<u>명에 대하여 3년 이내</u>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	4		
간은 <u>1년 이내</u> 로 한다. 다만,	<u>3년 이내</u>		
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			
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			
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			
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			
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			
기간 이내로 한다.		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		